

기업경영학과 장학금 지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라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2조에 의거 기업경영학과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장학금 지급 규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신라가족 장학금
3. 리더십 장학금
4. 기타 외부 장학금

제2장 장학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제4조(성적 및 학점기준) ① 각종 장학에 적용하는 성적기준은 당해 학기 등록한 재학생에 대하여 직전학기의 평점평균 성적으로 한다.

② 학점기준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제외한다.

③ 외부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적 및 학점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선발시기) 장학생의 선발시기는 매 학기 단위로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부)·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학금 성격에 따라 신청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당해 학기 등록처리 이후 매학기 학생의 개인계좌로 후지급한다.

제8조(장학생 추천)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추천 기준에 따라 학과(부)회의를 거쳐 장학금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명단을 학생지원처에 제출한다.

제9조(명칭 및 구성) ① 본 장학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장학생 추천을 위하여 장학생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1명
2. 위원 : 기업경영학과 소속 교수 전원 및 학생대표 2명

3. 간사 : 1명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 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위원) ① 위원은 기업경영학과 소속 교수 전원 및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며, 학생대표는 집행부 중 학과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학사조교로 한다.

② 간사는 이 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장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되 위원회에서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1. 회의의 준비
2. 회의록 작성
3. 회의결과의 업무처리

제1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장학금 지급지침 제정 및 개정
2.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액, 대상자 선정, 등급조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에 관한 당해 연도 기본 방침수립 및 장학생 인원배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3일 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 위원, 간사가 서명날인 후 보관한다.

제16조(지급한도)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외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장학금의 합계가 당해 학기 본인부담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장학금은 관련 지침 또는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학금의 등급 및 지급액) ① 장학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 : 당해 학기 수업료의 50%
2. 나급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5%
3. 다급 : 당해 학기 수업료의 10%

② 등급별 지급액은 본인부담금의 범위 이내에서 전체 대상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이중수혜의 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할 수 없다.

② 국가장학금 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수혜자는 본인부담금의 범위 이내에서 국가장학금 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수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가급 수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을 전액 수혜받을 경우 차등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생추천위원회에서 이중지급 허용 여부를 심사한 후 처리한다.

제19조(수혜자격의 제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 등의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은 소멸되고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3장 장학금의 종별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제20조(성적우수 장학금) ① 당해 학기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직전학기 재학생을 기준으로 제17조 제1항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직전학기 최소 취득학점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3과목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점수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별표 1에 정하는 이수학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구 분	내 용	최대 인정 점수
① 해당 학기 성적점수	(과목별 점수 합계/300) × 70	70
② 행사참여 및 학생회 봉사	행사별 차등 점수부여	20
③ 발전기여도	국내·외 수상, 각종 홍보	10
총점 (①+②+③)		100

※ 해당 학기 성적점수는 과목당 100점을 기준으로 3과목 총 300점으로 한다. 단,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한 성적을 적용한다.

※ 기본적인 학과행사별 참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 학기 동안의 학과 행사 참여 및 기여도를 누적 기록하여 평가한다. 단, 반영 대상의 추가 및 삭제는 위원장과 위원이 상의하여 정한다.

구 분	내 용	참여 및 기여도 점수
당일행사	입학식, 졸업식, 학과체육대회, 축제행사, 선후배한마당, 학과초청강연회, 졸업여행 등	1
2일행사	MT	

※ 발전기여도 및 자격증 : 국내·외 수상 및 각종 홍보 등의 인정여부는 장학생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신라가족 장학금) 당해 학기에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우리 대학교 학부에 재학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되,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등급 및 지급액 기준을 따른다.

1. 2명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상급생에게 나급을 지급한다.

2.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경우 성적우수생에게 지급한다.

제22조(리더십 장학금) ① 학기 초 전 학년을 대표할 학회장 및 집행부를 선발해 교내·외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정하는 정원과 등급을 기준으로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학회장 : 나급

2. 집행부(22명 이하) : 다급

②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23조(기타 외부 장학금) ① 국가기관, 공공단체, 외부의 장학회 및 개인이 제공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지정장학금 :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2. 추천장학금 : 학과의 추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② 전항 제2호의 대상자는 해당 학과(부)·전공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외부 장학금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공포일 : 2013. 5. 7)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4. 3. 7)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4. 9. 2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5. 3. 16)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5. 9. 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6. 5. 2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7. 11. 17)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8. 12. 1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19. 5. 28)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포일 : 2021. 12. 3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적우수장학생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기준표>

구 분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학점 인정범위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신입생	6학점	12학점	18학점	24학점	졸업학점의 20% 범위 내
편입생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 계약학과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입학 이전의 근무경력만 인정됨. (관련 :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7조제2항)

(별표 2)

<리더십장학금 선발 정원 및 등급기준표>

직	책	정 원(명)	등 급	비 고
학	회 장	1	나	
부	회 장	2	다	
감	사	1	다	
사	무 국 장	1	다	
사	무 차 장	1	다	
재	무 부 장	1	다	
홍	보 대 사	학년별 1	다	
총	대	학년별 1	다	
부	총 대	학년별 1	다	
총	무	학년별 1	다	

* 기준적용 집행부는 학기 초 선발함.

(별지서식 1) 장학생 선정 회의록

장학생 선정 회의록		
1. 학과(학부, 전공) :		
2. 회의일시 : 20 . . () 00:00~00:00		3. 회의장소 :
4. 참석자명단 :		
5. 안건 :		
6. 회의내용 :		
학과(학부, 전공) 장학생 추천 위원	위원(장)	학과(부)장 : (인)
		학생 대표 : (인) 학생 대표 : (인)
	간사	학사조교 : (인)